

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

의회운영위원회

# 검 토 보 고 서

2024. 9. 6.



의회운영위원회  
전문위원 나태연

# 목 차

1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..... 1
2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..... 4
3.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..... 7

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539호
- 발 의 일: 2024년 8월 23일
- 발 의 자: 김보경 의원 등 3인
- 회부일자: 2024년 8월 26일

## 2. 제안사유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연가전환 및 연가 가산, 특별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, 자녀 보육휴가 등을 신설하여 소속공무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규정 신설(안 제13조)
- 경력직공무원·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일수 확대(안 제14조)
- 경조사별 휴가일수 및 장기재직휴가 확대(안 제15조제1항, 제15조제4항)
- 치유휴가 및 자녀 보육휴가 규정 신설(안 제15조제9항, 제15조제10항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 
안 제13조에는 시간외근무 시 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
- 안 제14조에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민간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가가산일수를 현재 2일에서 3일로 확대 하였습니다.
- 안 제15조(특별휴가)
  - 제1항, 경조사휴가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현재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으며
  - 제4항, 장기재직휴가 대상의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으로 확대하고, 의장이 대상 공무원에게 10일 이내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고
  - 제9항, 직장 내에서 성희롱, 성폭력, 폭언,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연간 14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얻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으며
  - 제10항,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 양육을 돕고자 해당 자녀 1명을 둔 경우에는 연간 10일, 2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연간 15일의 범위에서 자녀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,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도움으로써 달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여 저출생시대에 근무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540호
- 발 의 일: 2024년 8월 23일
- 발 의 자: 이연숙 의원 등 4인
- 회부일자: 2024년 8월 26일

## 2. 제안사유

-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의원 연구단체 구성·운영 관련 조례 참조안('23.11.24.)을 반영하여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연구와 입법 능력 향상을 위해 구성·운영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연구경비 지원 및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9조)
- 연구경비 집행·제한과 연구활동 보고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3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달성군의회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연구와 입법 능력 향상을 위해 구성·운영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효율적이고,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(연구단체의 구성)
  - 연구단체 구성인원을 3명에서 5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
  - 연구단체 존속기간을 등록 통지일부터 연구활동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되, 그 활동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으로 개정·신설함으로써 연구단체 존속기간과 연구활동기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절차상 효율성을 높였습니다.
- 안 제4조(연구단체의 등록 등)
  - 연구경비 지원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함에 따라 등록 및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
  - '25.1.1.부터 연구단체 등록 서류를 매년 3월 31일(의원 임기 개시 연도는 8월 31일)까지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구단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그 구성·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.
- 안 제7조~제9조에는 심사위원회 기능을 연구경비 지원 등에 관한 심사로 축소하고, 심사결과 통보 대상 등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발생하는 현행 운영 및 절차상 문제를 개선하고자 문구, 서식 등을 개정하였습니다.

○ 안 제10조~제13조

- 연구활동 결과보고 대상을 의장으로 개정하였으며
- 연구단체 연구활동 경과 또는 실적에 대한 중간보고를 의장이 연구단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.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540호
- 제 출 일: 2024년 8월 23일
- 제 출 자: 달성군수
- 회부일자: 2024년 8월 26일

## 2. 제안사유

-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3.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인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증액분 반영
- 의전 행사에 착용할 관복구입비 신규 반영
- 정책홍보팀 신설에 따른 전문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비 반영
- 의회 정원 증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증액분 반영

## 4. 추가경정예산안 내역

- 세출예산 (단위: 천원, %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감액	증감률
의회사무국	3,312,223	3,230,423	81,800	2.53%

○ 사업 내역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예산액	기정액	증감액
지방의회 운영 지원	1,684,629	1,604,029	80,600
의정활동 지원	922,790	863,190	59,600
의정활동 홍보	259,489	238,489	21,000
의회청사 환경정비 등 관리	494,950	494,950	0
합리적인 인사행정	7,400	7,400	0
행정운영경비	1,627,594	1,626,394	1,200
인력운영비	1,578,312	1,577,112	1,200
기본경비	49,282	49,282	0

- 의정활동비 57,600천원 증액 편성
- 행사관복구입 2,000천원 신규 편성
- 의회홍보 SNS 등 관리 11,000천원 신규 편성
- 의정홍보 신문광고료 10,000천원 증액 편성
- 대민활동비 1,200천원 증액 편성

## 5. 검토의견

-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
기정예산 3,230,423천원 대비 81,800천원(2.53%) 증액된  
3,312,223천원으로 편성되었음
- 세출예산 편성 내역(정책사업별)은  
지방의회 운영 지원 1,684,629천원으로  
기정예산 대비 80,6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,  
행정운영경비는 1,627,594천원으로  
기정예산 대비 1,200천원이 증액되었음

- 세부 내역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과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」(2024.4.1.시행)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의정활동비 57,600천원이 증액되었고, 의전 행사에 착용할 관복 구입을 위해 행사관복구입비 2,000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음
  
- 정책홍보팀 신설(2024.7.1.)로 의회 홍보 활동에 역점을 두고자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매체 활용을 위하여 의회홍보 SNS 등 관리 11,000천원 신규 편성, 의정홍보 신문광고료 10,000천원이 증액되었음
  
-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증원된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1,200천원을 증액하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